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4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전진숙 · 남인순 · 이주희
채현일 · 박지원 · 박해철
김 윤 · 이수진 · 윤건영
김한규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하려는 것임(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친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또는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생략)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친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또는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③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